

식당 사용 · 수익허가 입찰 공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대상재산: 성남종합스포츠센터 A동 지하1층 식당 1개소

- 위치: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,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내

연번	업종	면적(㎡)			예정가격(원)			비고
		합계	전용	공용	계	사용료	부가세	
1	식당	634.53	483.55	150.98	51,341,300	46,673,910	4,667,390	A동 지하1층

※ 상기 예정가격(연간 사용료)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세 포함가격입니다.

※ 매월 둘째·넷째주 일요일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정기 휴관일로 영업을 불가하며,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운영시간 내에 영업을 허용됩니다.

나. 입찰일정

- 입찰방식: 온비드 전자입찰(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)

- 입찰기간: 2019. 1. 25.(금) 16:00 ~ 2. 1.(금) 16:00 / 7일간

- 개찰일시: 2019. 2. 7.(목) 10:00 ~

- 개찰장소: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입찰담당관 PC

다. 계약기간: 5년 이내

라. 사용료 산정방법

- 1차 연도: 최고 낙찰가격

- 2차 연도 이후: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 제31조 제3항 산출식 근거

$$\text{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} \times \text{해당 연도의 재산가격} \div \text{입찰 당시 재산가격}$$

2. 입찰대상 현장설명

본 입찰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가 없으며, 현장(대상재산)은 입찰참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주변 지역여건, 시장성 등은 물론 해당시설 현황 및 각종 공부(公簿)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3. 입찰 참가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및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경과된 자

나. 온비드 「입찰참가자 준수규칙」에 위배되지 않는 자

다. 입찰 공고전일 기준
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시인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소의 소재지가 성남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

라.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(이하 “온비드” 라 함)에 이용자(회원) 가입 및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「공인인증서」를 발급 후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

※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 「<http://www.onbid.co.kr>」를 통해 이용자(회원)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등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입찰 참가방법

가. 본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.

※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「동영상매뉴얼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입찰서는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온비드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며 해당 입찰의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입찰금액은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.

라. 유의사항(본 입찰 참가의 무효기준)

- 동일인이 1개의 입찰 대상 재산에 2회 이상 입찰서 제출
- 입찰참가 후, 입찰보증금 미납부
- 공동참가(2인 이상 공동명의로의 입찰참가)

5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가. 입찰보증금 납부

- 입찰보증금은 입찰가 총액의 100분의 10 (10%) 이상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온비드 입찰화면 중 “**입찰금액 및 보증금 납부 방식 선택**” 에서 선택한 보증금 납부계좌(**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하나은행, BNK부산은행 중 선택한 1개의 은행의 일회용 계좌**)가 입찰 참가자에게 부여되며, 해당계좌로 인터넷뱅킹, 폰뱅킹, 창구입금, ATM기 입금 등 입찰참가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마감시간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
[유의사항]

-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입찰보증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되지 않는 경우
 - ① 입찰보증금을 입찰가 총액의 10% 미만으로 입금하는 경우
 - ②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
 - ③ 수표 입금 시 수표의 발행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입금하는 경우

나. 입찰보증금 귀속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방계약법” 이라 함) 제12조 제3항에 의거,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,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.
- 또한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,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향후 우리 공사 공유재산 입찰참가에 7개월간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낙찰자 결정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이하 “공유재산법” 이라 함)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에 의거,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자(입회검사 완료자)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나.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다. 낙찰결과는 최종 낙찰자 본인에게만 통보되며 그 밖에 입찰 유/무효 참가수 및 낙찰금액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7. 입찰의 무효

다음의 법령 및 규칙 등을 위배한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.

가.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
나. 온비드 홈페이지 회원약관 및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

다. 본 입찰공고문의 명시된 입찰참가 준수사항

8.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

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, 당 공사의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게재에 의합니다.

9. 계약의 체결

가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**15일한** 사용료 납부 및 구비서류,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.

나. 사용료 납부

※ 입찰 예정금액 및 낙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10% 포함 금액입니다.

-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- 1차 연도 사용료는 입찰당시 낙찰가격 총액으로 하며 소정의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, 산정된 금액을 해당 연도 사용·수익허가기간 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다. 기타 구비서류

-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신청서(수입증지 5,000원 포함 본) 1부.

※ 「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거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신청서에 수입증지 5,000원 징수 의무

- 각서 1부.
- 낙찰자 신분증 사본 1부.
- 낙찰자(개인 또는 법인)의 인감도장 지참
- 낙찰자(개인 또는 법인)의 인감증명서 원본(낙찰일 이후 발급본) 1부.
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(낙찰일 이후 발급본) 각 1부.

○ 계약체결 후, 영업개시 전 제출서류

※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‘계약 일반조건’ 참조

- 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.
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1부.
-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 1부.

라. 사업자등록증 제출

-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자 명의로 신고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0. 유의사항

- 가.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(입찰공고, 사용·수익허가 계약 조건 및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)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사용·수익허가 대상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거,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이 필요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합니다.
- 다. 판매품은 소비자 권장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, 공사에서 판매품목과 가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특히 대상재산의 관리와 민원사항에 관한 행정조치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.
- 라. 자동판매기는 일체 설치 할 수 없습니다.
- 마. 상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비품과 실내 인테리어 시설은 낙찰자 부담이며 사용·수익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.
- 바.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사용·수익(입주) 시작일에 대하여 당 공사와 사전 협의하고 당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상 상점의 개점지연은 불가합니다.

- 사. 사용·수익허가 대상재산의 사용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, 특히, 상점 입점 후 영업기간 중이라도 당 공사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개선을 위해 사용·수익허가 대상재산에 대한 시설물 점검, 정비, 보수 시행 시 이에 대한 제반사항 모두를 수용하여야 합니다.
- 아. 사용·수익허가 대상재산은 영구시설물의 일체를 축조할 수 없으며, 임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당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- 자.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회원관리규약에 따른 음주자 이용불가사항으로 주류판매, 음주행위는 일체 불가합니다.
- 차.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와 입찰공고 외 별도 첨부된 「계약 일반조건」 및 「계약 특수조건」에 의합니다.
- 카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타. 당 공사는 각종 비리 및 불공정행위, 부당요구 등의 근절을 위해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(☎ 031-725-9378, FAX 031-725-9497)
 - 공사 청렴신고센터에 신고 (<http://www.isdc.co.kr>)
(공사 홈페이지 > 고객광장 > 청렴신고센터)
- 파. 입찰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성남종합운동장 시설팀 공유재산 담당자 배병은 (☎ 031-739-6732)

2019. 1. 25.

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

직인생략